

[별표 2]

정부 보급종 수매 검사기준 및 방법(제11조제1항 관련)

1. 수매검사 대상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한 종자로 한다.

2. 수매검사 신청

가. 작물별 생산담당자(경기도종자관리소장)는 단지별 수매개시 20일 전까지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해당지원 검사팀에 수매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검사팀은 수매개시일 전까지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검사팀은 종자휴면에 따른 발아 지연 및 재검사 등으로 수매개시일 전까지 수매검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수매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생산팀(경기도종자관리소장)에 중간 통보하고 검사일정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수매검사 규격

가. 지원장은 다음 각 작물별 수매검사 규격에 따라 종자를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연재해 등으로 종자검사 규격을 다르게 정한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벼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품종	이종종자	잡초종자	피해립	병해립		이물	미숙립률	메벼출현율
							특정병	기타병			
98.0	85	14.0	0.10	0.05	0.30	3.0	5.0	10.0	2.0	4.0	0.6

* 다만, 산물수매 시 수분 규격은 16.5%로 한다.

* 피해립은 박피립 등 정선과정에서 선별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 발아율 검사 시 미숙립 등 정선과정에서 선별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 수발아 발생 우려 등으로 지원장이 조기수확을 지시한 품종은 미숙립률에 한하여 규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매할 수 있으며, 초과된 비율만큼 수매량에서 제외한다.

예) 미숙립률 6%(2% 초과)짜리 100kg은 98kg 수매로 등록

2) 보리(겉보리, 쌀보리)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품종	이종종자	잡초종자	피해립	병해립		이물	매성 배유개체 출현율
							특정병	기타병		
98.0	85.0	14.0	0.20	0.20	0.40	5.0	4.0	10.0	2.0	0.6

* 정선시설 및 기술의 발달로 제거가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잡초로 보아 이탈리아라이그라스 · 헤어리비치 및 목초종자는 잡초종자로 분류한다.

3) 밀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품종	이종종자	잡초종자	피해립	병해립		이물	
							특정병	기타병		
98.0	85.0	12.0	0.20	0.10	0.40	5.0	0.2	10.0	2.0	

* 다만, 산물수매시 수분 규격은 13.0%로 한다.

* 정선시설 및 기술의 발달로 제거가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잡초로 보아 이탈리아라이그라스 · 헤어리비치 및 목초종자는 잡초종자로 분류한다.

4) 콩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품종	이종종자	잡초종자	피해립	병해립		이물	
							특정병	기타병		
98.0	85	14.0	0.50	0.10	0.20	5.0	5.0	10.0	2.0	

5) 사료용 품종(호밀, 트리티케일, 벼 · 보리 등)

구분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종종자	잡초종자	이물
벼	98.0	80	14.0	0.20	0.40	4.0
보리, 호밀, 트리티케일	98.0	80	14.0	0.20	0.20	4.0

* 보리의 이품종 최고한도(%)는 6.0%로 한다. 다만 이품종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중 어느 한 품목이 섞인 것을 말한다.

6) 쌀

최저한도(%)		최고한도(%)								
정립	발아율	수분	이품종	이종종자	잡초종자	피해립	병해립		이물	
							특정병	기타병		
98.0	85	13.0	0.50	0.10	0.20	5.0	5.0	10.0	2.0	

나. 이 기준 및 방법에서 다루지 않은 작물에 대해서는 ‘종자관리요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2조 포장검사 등의 검사기준’을 준용한다.

4. 소집단(Lot)의 구성

수매검사를 위한 소집단은 작물별, 품종별, 농가별, 품위별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소집단의 최대 중량은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에서 정한 중량으로 한다.

5. 소집단의 밀봉

- 가. 소집단의 포장(용기)은 봉인할 수 있거나 자동 봉인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봉인은 포장할 경우 자동적으로 봉인이 되는 것 또는 종자검사원이 인정하는 봉인이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료채취원의 통제에 따라 공인된 봉인 도장을 찍거나, 지울 수 없는 표시를 하거나, 개봉하면 파손 또는 흔적이 남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6. 수매종자의 중량검사

- 가. 수매종자의 무게는 농가별 수매대상이 되는 종자의 총량을 측정하되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으로 한다. 다만, 포장수매의 경우 임의추출 방법으로 검사하고, 소집단별 조사수량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포장수매 시 중량검사 기준

소집단 크기	1~10대	11~100대	101~300대	301~500대	501대 이상
조사수량 또는 비율	50% 이상	10대 이상	15대 이상	25대 이상	5% 이상

- 나. 산물수매 수분 규격으로 수매한 종자(벼 16.5%, 밀 13.0%)의 수매량은 건조 후 종자 중량의 산출 공식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 건조 후 종자 중량 산출 공식

$$\text{건조 후 종자 중량} = \text{산물종자 중량} \times \text{중량지수}^*$$

$$* \text{중량지수} = \frac{100 - \text{종자의 당초 수분}(\%)}{100 - \text{건조 후의 수분}(\%)}$$

7. 시료채취

- 가. 시료는 채종농가 또는 생산관리지도원 입회하에 시료채취원이 채취한다.

나. 소집단별 1차 시료채취는 "1) 시료채취기준"에 따르며, 사전시료의 양은 "2)제출시료의 최소 중량" 이상이어야 한다.

1) 시료채취 기준

소집단 크기	1~15대	16~30대	31~60대	61~100대	101대 이상	비 고
1차 시료 개수	매 포장 1개소 이상	15개소 이상	20개소 이상	30개소 이상	40개소 이상	사전시료 1점

2) 제출시료의 최소중량

구 분	벼	콩	팥	보리	밀	사료용 품종
중량(g)	7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시료채취원은 다음의 경우 시료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

- 1) 시료 채취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소집단의 품위가 확연히 불균일할 경우. 다만, 채종농가가 희망하여 품위별로 소집단을 다시 편성한 경우 시료채취할 수 있음
- 3) 소집단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가 불량하여 균일한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지원장이 지정한 포장재에 담겨있지 않은 경우
- 5) 시료의 수분이 검사규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라. 시료채취원은 농가명, 물량, 수분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시료채취대장"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내역을 종자관리통합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마. 시료채취원이 농가별로 채취한 사전시료는 지체없이 종자검정실에 송부(제출)하여야 한다.

8. 수매검사 방법

가. 접수된 시료는 순도분석, 발아율 검정 등의 검사를 신속하게 완료 하여야 한다.

나. 발아시험은 마감일 전이라도 수매검사규격 이상 발아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채종농가에 사전 통보할 수 있다.

다. 발아시험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아시험을 즉시 종료하고 결과를 수매검사 신청자 또는 채종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시험 중인 종자가 최대로 발아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비정상묘 및 죽은 종자가 많아 나머지 종자가 모두 정상묘로 자란다고 하여도 합격범위에 들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수매검사에 합격한 종자는 수분함량을 확인하거나 품위의 변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수매 당일 수매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마. 수매검사 결과 불합격한 종자에 대해 해당 농가가 재검사를 희망하고, 재정선 또는 건조 등 소집단 구성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시 시료채취하여 수매검사를 할 수 있다.

9. 수분함량의 측정

가. 수분측정은 저온항온 건조기법 또는 고온항온 건조기법으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보조 수분측정법을 사용할 수 있다.

- 1) 농가별로 채취한 사전시료의 수분함량을 확인하여야 할 경우
- 2) 수매일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수분함량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시료관리

가. 수매검사를 위한 사전시료와 수매 당일 검사한 시료는 종자 민원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품위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료 접수일부터 1년간 저온보관하여야 한다.

11. 기타

가. 수매검사 방법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종자 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을 준용한다.